

내 신상정보가 1천500원?

글 | 김 현 _ 법무법인 세창 대표/대한변협 사무총장 hyunkim@sechanglaw.com

얼마 전에 본 TV광고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엄숙한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패널들은 여느 때처럼 그 의견에 따라 찬반 양쪽으로 갈려 사회자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 유난히 찬성측의 한 명과 반대측의 한 명이 소리를 높여 대립각을 세우더니 급기야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먹살잡이까지 하게 된다. 그러다가 우리 나라에서 늘 그렇듯 서로의 나이를 따지기 시작하더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로의 나이를 확인한 후에는 선후관계가 분명해지자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겸연쩍은 듯 인사를 하는 것으로 광고는 마무리된다.

이 광고는 원형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좌뺑우뺑’이 맞니 ‘우뺑좌뺑’이 맞니 하고 티격태격하던 젊은 남녀 텔런트가 등장한 광고의 시리즈물로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이동통신업체의 광고다. 광고가 전체적으로 코믹하게 연출되어 있으므로 가볍게 보고 그냥 웃어넘겨도 될 문제지만 필자가 만약 저 상황에 처한다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심적 상태가 법조인이 가지는 직업병적인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소 안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가볍게 떨쳐내기가 쉽지않은 않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침해 심각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수집과 집적, 이용에 있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진전이 있었고 그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술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동안 보호되어 왔던 개인의 권리, 특히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새로운 환경 아래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의 광고에 나타난 경우만 하더라도 생년월일이 뭐 그리 대단한 정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꽤나 유명한 연예인들끼리 술자리에서 나이가 시비가 되어 주먹다짐까지 간 사건에서 보듯 나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



보가 한 군데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단편적인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정보성을 취득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상정보 1개 당 1천500원에 대량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한다.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2조),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제23조). 특히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1조 제1항).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제2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24조의 2).

'정보통신망법' 으론 한계, 스스로 관리해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하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기타 방법에 의한 정보 수집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정보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한정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등을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고(제30조 제2항),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함으로써(제30조 제1항) 수집된 자신의 개인의 정보가 파기되거나(제30조 제3항) 그 오류가 정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제30조 제5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4조의 2 제1항).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검거된 수가 2001년 926건에서 2005년에는 2천889건까지 급증하였다고 한다. 아무리 법 규정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들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과기부·건교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